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316 회 정례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5. 11.

강 한 곤 의원

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강한곤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층의 문화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단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을 확대 변경 하였고
- 안 제7조제3항에서는 위촉된 단원의 활동 연령 기준을 상향 하였습니다.

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-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**

-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강한곤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5114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14.

발 의 자: 강한곤, 황국주, 권숙자,  
남현주, 김정희, 정순옥,  
장호섭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층의 문화 참여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이 합창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원의 자격과 위촉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창단 운영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단원의 자격 및 선발 기준 확대 변경(안 제6조제1항)
- 위촉된 단원의 활동 연령 기준 상향(안 제7조제3항)

## 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,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25세 이상 55세”를 “19세 이상 60세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60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합창단의 단원은 달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음악 활동에 관심이 많고 성악에 자질이 있는 자로 하며, 신규단원은 <u>25세 이상 55세</u> 이하의 자 중에서 모집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지휘자, 반주자, 트레이너 및 솔리스트를 제외하고 단원의 활동 연령은 <u>60세</u>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, 합창단 활동에 지장이 없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단원의 자격 및 선발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9세 이상 60세</u>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단원의 위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# 【 관계 법령 】

## 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